#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0 발의연월일: 2024. 6. 5.

발 의 자:김희정ㆍ서일준ㆍ이종배

박준태 · 김태호 · 이인선

임이자 · 서지영 · 곽규택

구자근 · 강대식 · 박정하

안상훈 • 이성권 • 정성국

이만희 · 한지아 · 조배숙

조지연 · 이헌승 · 서명옥

정연욱 의원(22명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 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.

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함.

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

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2(수당 등의 환수) 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,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,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한다.
  - ② 제1항의 재판은 국회의원의 임기 중 또는 임기 전에 범한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을 말한다.
  - ③ 제1항의 공소는 국회의원의 임기 전에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당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 선 설>       제14조의2(수당 등의 환수) ① 금         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,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, 입법활동비 및특별활동비를 환수한다.	현 행	개 정 안
		제14조의2(수당 등의 환수) ① 금 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,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, 입법활동비 및특별활동비를 환수한다. ② 제1항의 재판은 국회의원의임기 중 또는 임기 전에 범한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을 말한다. ③ 제1항의 공소는 국회의원의임기 전에 제기된 경우를 포함